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만균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524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3월 31일

발 의 자: 임만균, 강석주, 김성준,
김영철, 김원중, 남창진,
민병주, 박승진, 박중화,
박칠성, 봉양순, 서상열,
송재혁, 유정인,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종환,
최민규, 최재란, 한·신,
허·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24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동시행령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핵심 정책의 공백 등이 우려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세부 내용을 신설(안 제3조의2 제2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5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
2. 박물관 및 미술관의 역량강화 방안
3. 박물관 및 미술관의 관람 활성화 방안
4. 그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 계획 수립) 시장은 법 제5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 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5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 2. 박물관 및 미술관의 역량강화 방안 3. 박물관 및 미술관의 관람 활성화 방안 4. 그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행계획에 포함된 순감소나 사안을 구체적으로 명시(추진 기본방향, 역량강화 방안, 관람 활성화 방안 등)한 것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 병 준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